

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규정

시행일: 2024.10.2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처 부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(International Center for Quantum Matter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양자물질 및 소자 플랫폼 연구를 수행하고, 교내 과학자들의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,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양자물질, 양자 컴퓨터, 양자 센싱, 양자통신 등 전 주기적 양자 기술 관련 국내외 협업 지원
- 양자 기술 관련 이론 및 소자의 제작/측정/해석을 위한 교내외 연구지원
- 최첨단 장비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
- 관련국내외 연구기관 및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와 공동연구 및 지원 업무 협력
- 그 밖에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기 구

제5조(조직)

①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- 센터장
 - 연구부센터장
 - 운영부센터장
 - 운영위원회
 - 연구팀
 - 운영팀
- ② 운영위원회 및 각 팀의 구성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센터장)

-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-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(원)장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.
-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부센터장)

- ① 연구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연구팀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연구부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부센터장)

- ① 운영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운영팀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운영부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 운영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

-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의 연구원 중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센터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
 - 2. 연구 방향의 설정과 주요사업 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센터장 추천 등 센터 내 인사 관련 사항
 - 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연구팀)

-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 연구 협업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둔다.
- ② 연구팀은 연구부센터장을 팀장으로 하고 센터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 및 역할을 담당한다.
 - 1. 센터 연구의 기본 방향 및 내용 설정
 - 2. 국제협력 연구 방향의 설정과 주요연구 내용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전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동의하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팀)

- ① 센터 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둔다.
- ② 운영팀은 운영부센터장을 팀장으로 하고 센터의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와 역할을 담당한다.
 - 1. 연구비 및 예산 관리
 - 2. 연구 성과 보고 및 지원
 - 3. 센터의 질적 관리 및 조정

4. 회의 및 행사 준비 및 운영
5. 문서 작성 및 관리(회의록, 보고서 등)
6. 외부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력 및 소통 관리
7. 그 밖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고문)

- ① 본 연구센터의 업무·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② 고문은 센터의 위원회 심의 후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원)

- ① 연구원은 상임 연구원과 전문 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 1.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 2. 전문 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 3.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초빙하거나, 필요에 따라 센터에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 4.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.
 5.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 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면하며, 임면 후 바로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직원) 센터에 행정 전담 직원을 두며, 본 센터의 사무 처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.

제3장 재정과 회계

제15조(재정)

- ① 센터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.
 1. 교내연구비
 2. 정부, 기업 등 대외 연구개발과제 수주 수탁액
 3.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설정된 기관 부담금
 4. 장비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
- ② 지출은 연초 편성한 센터의 운영 재원의 과목별로 지출하며 본 센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6조(회계 등)

-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- ② 교비 또는 대외과제, 용역 수주 등에 따른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- ③ 결산은 연도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며 결산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7조(공간 등 반납) 본 센터 폐쇄 시 공간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반납한다.

제18조(보칙)

- ① 본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